

공연장의 안전실태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상주사고를 중심으로 -

김태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A Study of Safety Actual Conditions and Safety Net of Theaters

Tae-Hwan Kim
Dept. of Guard & Security, Yong-In University

1. 서 론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대형사고로 인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주시에서 후진국형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참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행사측과 행사기획의 허점특성이인 진행과정이 있었다면, 절차나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행정절차의 무시는 정부 및 지자치의 관리부실의 결과 였다. 이번, 사고는 1980년 이후 주로 가을철에 열리는 지방축제와 함께 인기가수들을 동원한 공연이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등한시한 당연한 결과이다. 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화성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참사 등 일련의 대형사고와 함께 우리사회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전환기에 처해있음을 무수한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통해 알리는 경고의 휘슬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OECD가입 이후 국제화와 문화활성에 정부나 지자체가 모은 정성을 공연이나 문화관람이란 측면에서 확대되어가는 와중에 발생한 사고 여서 더더욱 그 사례의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공연장에 있어서의 안전대책을 제안하기 이전에 상주사고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연장에 있어서의 안전대책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 하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우리 주위에 최근 들어 공연장에서의 사고소식을 자주 접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우상이 출연하는 공개공연장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번번이 안전을 소홀히 해 사고가 되풀이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92년 2월 뉴 키즈 내한공연 이래 잊

을 만하면 한 번씩 발생했다. 대구에서는 1995년 10월에도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공개공연에 1만여명의 관객이 한꺼번에 입장하려다 여고생 등 8명이 인파에 깔려 부상당한 사고가 일어났었다. 공연장 우방타워랜드의 수용인원 2천5백명의 세배가 넘는 숫자였다. 그러나 출입문은 단 두개뿐이었고 공연 시작 1시간여 전에 한쪽 출입문을 열자 관객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참사가 발생했다. 정황을 되돌아보면 사고 가능성은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경찰이나 주최측은 2천명 정도의 관객이 입장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예측으로 줄서기 정도나 유도했다고 하니 결과적으로 안이한 대처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주최측이나 공연장측이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청소년들이 질서를 지켰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런 크고 작은 몇차례 사고를 겪고도 여전히 공개공연장 안전에 소홀한 우리 사회의 무신경이 두렵다.



사진 1. 공연장에서의 사고의 위험성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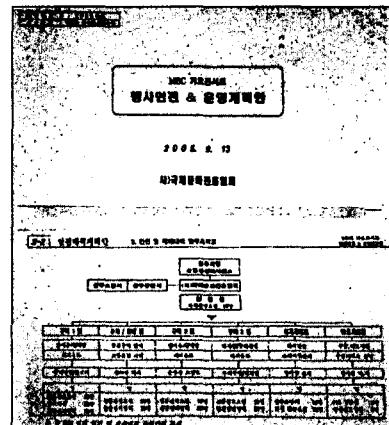


그림 1. 행사안전 계획서(상주)

2.1 상주사고의 실태

2005년 10월 3일(월), ‘제7회 상주자전거축제’의 일환으로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진행된 ‘MBC 가요콘서트’ 녹화무대에서 11명이 숨지고, 70여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녹화 무대 사상 최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날의 행사는 상주시에서 제7회 상주자전거축제 행사의 마지막날 프로그램으로 ‘MBC 가요콘서트’를 유치, 상주시 주최, (사)국제문화진흥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였다. 당시 운동장에는 5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의자가 설치돼 있었으나 무대 앞에 자리를 차지하려는 관중들이 앞 다퉈 입장하려다 변을 당했다. 시민운동장에는 4개의 출입문이 있었지만 주최 측은 관중 통제를 위해 한 곳만 개방했다. 특히 너비 8m인 출입문의 절반을 열어 피해를��웠다. 더욱이 만여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는데도 좁은 출입문 한 곳만을 개방해 강철문이 휘면서 피해를 더욱 키웠다. 또한, 사고 당시 상주시민운동장 주변에는 구조요원은 전혀 없었고 안전 요원도 태부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2 문제점

이번사고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면,



사진 2. 상주사고 출구쪽 사고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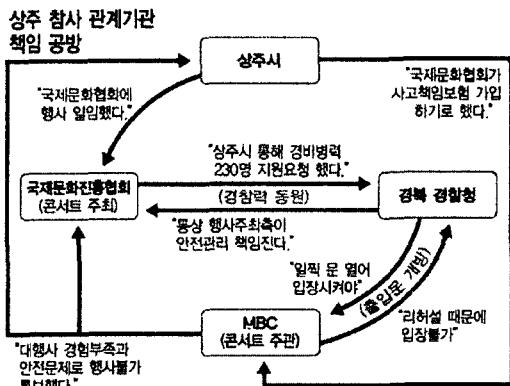


그림 2. 상주사고 책임공방 체계도(동아일보)

- 공연·행사장 종합적 안전관리체계 미비로서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3항에 의하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전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하지 않았으며,
- 공연·행사장 전문 안전요원 배치기준 미비로서 안전요원 배치기준이 없어 행사주최측이 비용을 줄이려고 임의로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문 인력을 고용 배치하여, 안전사고 위험 상존 했다.
- 또한, 공연장 운영자 및 행사주최자 보험 가입의무 규정 부재로서, 공공시설 및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임의 규정으로 관람객 상해사고 발생시 보상처리에 관한 대책이 미흡했다.
- 그리고, 공연·행사장의 행사진행자나, 시설관리자, 안전요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부재로서, 자치단체, 행사주체, 유관기관, 관람객 등의 안전관리 및 행동 매뉴얼 전무 했으며
- 이번 공연장의 특성상 노약자, 학생 등이 혼재된 상태로 군집·입장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가 군집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행사였으며, 유관기관 등이 안전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방치 하였다.

- 대부분 이벤트성 지역축제에 안전분야는 도외시하는 경향은, 민선시대 각종 이벤트성 축제가 단체장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안전성 확보에는 소홀히 한 문제점을 남겼다.

2.3 안전대책방안

공연장은 다수의 불특성다수가 출입하므로, 그 안전대책은 대규모 공연·행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명확히 하면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공연·행사 재해대처계획을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NGO,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연·행사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대책을 협의·결정토록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각종 경기장이나 공연장 등 대단위 시설물에 대해 안전 중심의 설계와 설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장이나 공연장은 시설 특성상 야간에 이용객이 많으므로 비상구나 스탠드, 소방설비가 다른 시설물과 차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둘째, 공연법 제11조에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용어의 정의상 '안전대처계획'으로 바꾸고 '신고와 동시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처럼 적당히 신고하고 점검을 받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무의미하다.

셋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문적인 안전관리요원이 적정 인원 배치돼야 한다. 이번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요원이 턱없이 부족해 일반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축제나 공연을 기획하는 주체하는 축에서는 강제보험(예: 재난보험)을 들어야 하고, 운영자나 행사 주최측 그리고, 각 기관(소방, 경찰 등)은 유기적인 공조체계와 안전에 책임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만에 하나 관람객이 상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사전에 구급차나 경찰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등이 배치해서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신속한 인명 구조·구급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2차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대형 야외공연이나 행사에 대해 시설물 관리자 외 주체측이나 안전요원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과 비상대처가 준비돼야 한다. 다양한 경기장이나 공연장의 설비나 시설물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미연의 사고에 대응 체계를 갖추어 두자는 것이다.

3. 결 론

최근 들어 가을철에 집중 대규모 공연이나, 각급 지자체들이 앞다퉈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벌이고 있어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번 사고 발생 후 정부와 관련기관에서는 사고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정부차원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

그중에는 공연·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보급하고, 행사장 안전요원의 전문성 확보 및 배치기준 마련하여야 하며, 행사대비 사전대응계획 수립 및 경찰·소방력 배치기준을 지침으로 마련·운영하고, 공연법상의 재해대처계획 신고기준 및 벌칙 강화해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비, 관람객 등에 대한 효율적 배상방안을 미리 마련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와 각 지자체와 시행단체에서는 각종 행사의 안전 대책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정부의 표준 안전 지침에 따라 법의 준수하고 시행하는 것을 관리감독을하여야한다. 또한, 이번 상주 사고에서 희생된 생명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사고의 해결방식이 공연법이나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안전특별법(시특법)을 위시한 법 중심의 강화에 우선해서는 공연 자체를 위축시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 운 법의 제정이나 강화보다는 기존의 법을 잘 이행하고 점검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만이 공연 그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는 동시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金漢,變 "韓國 월드컵 競技場 特성분석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논문(2003).
2. 이상수, "시설경비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석사논문(2004).
3. 박남권,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경비적 안전대책 방안", 용인대학교 석사논문(2004).